

의안번호	2219762
의 퇴 인	박대출 의원
회 답 일	2026.7.16.
추계번호	26E3310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
3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8년 0.6억원 등 2028~2030년까지 총 1.8억원(연평균 0.6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

(단위: 억원)

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(안 제104조의32)	-0.60	-0.60	-0.60	-1.8	-0.6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2	안 제104조의32 (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)	○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6.12.31. → (개정안) 2029.12.31.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2	안 제104조의32(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)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의 시행일 및 연장된 일몰기한, 소득세 및 법인세 징수기준을 고려하여 2028~2030년을 추계기간으로 설정
 - 해당 과세연도 귀속분에 대한 세수효과는 종합소득 확정신고 및 법인세 확정신고가 이루어지는 다음연도에 반영되는 것으로 전제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제도 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

-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는 용역제공자 관련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과세자료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(사업소득분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임
 - 과세자료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 수 × 500원(최대 200만원)
 - 2025년에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용역제공자 1인당 공제금액이 300원에서 500원으로 상향조정
 - 현행 적용기한: 2026년 12월 31일
- 동 제도의 조세지출 실적은 2022년 0.05억원에서 2025년 0.6억원(잠

정치)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

[표 2]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조세지출 실적: 2022~2025년
(단위: 억원)

	2021	2022	2023	2024	2025 ^p
조세지출	신설	0.05	0.09	0.50	0.60

주: p는 잠정치

자료: 대한민국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연도

나. 추계 방법

- 2025년 잠정실적(0.6억원)을 기준으로 향후 조세지출 실적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용역제공자 관련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제 한도가 고정되어 있어 조세지출 증가가 제한적이므로, 2025년 수준의 실적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

다. 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8년 0.6억원 등 2028~2030년까지 총 1.8억원(연평균 0.6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

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(안 제104조의32)	-0.60	-0.60	-0.60	-1.8	-0.6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신홍철	박연서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신홍철	02-6788-4745	hongfe@assembly.go.kr